

라이프니츠의 정의에 관한 두 저작:

1. ‘필연적 진리로서 정의’에 대한 고찰

이상명*

주제분류 근대 철학, 정치 철학, 도덕 철학, 진리론

주요어 정의, 부정, 부당, 필연적 진리, 우연적 진리, 형식적 근거, 도덕적 필연성, 논리적 필연성

요약문

이 논문은 라이프니츠의 정의에 관한 두 저작에서 정의가 필연적 진리에 속한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우선 잘 알려지지 않은 라이프니츠의 정치 철학적 저작인 ‘정의에 관한 두 저작’을 소개하고, 정의가 필연적 진리라는 그의 주장을 고찰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추론의 진리와 사실의 진리의 구별을 살펴본다. 그리고 ‘정당한 것은 부당할 수 없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정의가 형식적 근거를 갖춘 필연적 진리라는 라이프니츠의 논증을 살펴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라이프니츠가 권리와 법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를 우연적 진리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의가 필연적 진리라는 주장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마지막으로 이 고찰을 통해서 나는 ‘도덕적 필연성’ 개념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 정의 개념이 형이상적 필연성과 도덕적 필연성 두 성격을 모두 갖는다는 것,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도덕 철학을 도덕적 의무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할 것이다.

* 숭실대학교

1. 머리말: 정의에 관한 두 저작

서양 정치 철학의 역사에서 라이프니츠는 크게 주목받던 인물이 아니다. 철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그는 논리학과 형이상학에서 크게 주목 받았고 주로 수학에서 인류 지성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치 철학자로 라이프니츠를 거론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렇다보니 근대 정치 철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자연권 이론에서도 라이프니츠는 그로티우스, 홉스, 푸펜도르프, 로크 같은 동시대 인물들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그가 정치 철학이나 자연권을 주제로 한 대표 저작을 남기지 않았고, 단편이나 서신, 초안 등의 형태로 남겨진 저작들도 매우 늦게 출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라이프니츠가 법학 박사였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제법 역사에 중요한 저작을 남겼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치와 도덕에 관한 저작에 주목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정치 철학이 라이프니츠 철학의 주요 유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자연권 이론과 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관심이나 평가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이프니츠는 정치와 도덕을 매우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철학자였다.

이 글은 라이프니츠의 정의 개념에 관한 두 단편을 통해서 정의가 필연적 진리라는 그의 주장을 살펴보고 한다. 우선 이 두 저작의 출간 역사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저작은 1885년 몰랏(Georg Mollat)이 모아 편집한 책, *Rechtsphilosophisches aus Leibnizens ungedruckten Schriften*에 포함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¹⁾ 이 책에서

1) Georg Mollat(hg.), *Rechtsphilosophisches aus Leibnizens ungedruckten Schriften*, Leipzig 1885, 56-82쪽. 이 책의 두 번째 판은 *Mittheilungen aus Leibnizens ungedruckten Schriften* (Kassel 1887, 44-77쪽; Leipzig 1893, 41-70쪽)이라는 제

몰랏은 이 두 저작을 하나의 작품으로 보아 「정의의 공통 개념에 관한 성찰」(*Méditation sur la notion commune de la justice*)이라는 제목을 붙여 편집 출간했다. 이 저작이 발견되었을 때, 라이프니츠의 수고에는 제목이 없었다. 앞의 제목은 몰랏이 편집 과정에서 붙인 것이며, 몰랏의 책이 출간된 후 독일어, 영어로 번역될 때에도 이 제목이 사용되었다.²⁾ 하지만 최근 아카데미 판 편집자는 이 저작이 발견 당시 한 봉투에 들어있었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내용 상 다른 두 저작이라며 특별히 다른 경로로 사전 출판했다.³⁾ 이 판본에서 첫 번째 저작은 「선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Sur la nature de la bonté et de la justice*)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저작은 「정의의 공통 개념에 관하여」(*Sur la notion commune de la justice*)라는 제목으로 편집되었다.

두 저작의 작성 시기는 원고의 워터마크로 모두 1703년으로 확인되었지만, 다른 두 저작이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저작이 쓰여진 배경과 두 번째 저작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저작은 1703년 여름 하노버에서 소피 선제후 부인(Kurfürstin Sophie)과 게오르크 루드비히 선제후(Kurfürst Georg Ludwig)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대화 후 라이프니츠가 수정하고 정리해 프로이센의 여왕

목으로 출간되었다.

- 2) 대표적으로 *Hauptschriften zur Grundlegung der Philosophie*, übers. von Arthur Buchenau, hg. von Ernst Cassirer, 2권, Hamburg 1996(초판: Leipzig 1906), 662-671쪽(부분 번역); *Leibniz: Political Writings*, trans. & ed. by Patrick Riley, Cambridge 1972, 45-64쪽; *Gedanken über den Begriff der Gerechtigkeit*, hg. Wenchao Li, übers. Pierre Castagner, Nina Asmussen, Stefanie Ertz und Stefan Luckscheiter, Hannover 2014, 23-51쪽.
- 3) Wenchao Li(hg.), “Das Recht kann nicht ungerecht sein ...” *Beiträge zu Leibniz’ Philosophie der Gerechtigkeit*, Studia Leibnitiana Sonderhefte 44, Stuttgart 2015. (Anhang: G. W. Leibniz: Zwei Schriften über die Gerechtigkeit, bearbeitet von Stefan Luckscheiter, 137-179쪽) 이 두 저작은 아카데미 판 정치적 저작 시리즈(*Sämtliche Schriften und Briefen, Reihe IV, Politische Schriften*)에서 아직 정식 출판되지 않았다.

소피 샤롯데에게 보냈다는 것이 서신으로 확인된다.⁴⁾ 즉 첫 번째 저작은 대학자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주군들, 즉 정치 권력자들 앞에서 정의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쓴 발제문 같은 것으로 내용상으로 보아도 수신자가 확실한 글이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저작은 라이프니츠가 청년 기부터 가져왔던 ‘현자의 자애(caritas sapientis)’라는 정의 개념을 자세한 논증을 더하여 제시하고 그 당시 논쟁의 대상이었던 노예와 아이들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글이다.⁵⁾

이 두 저작은 라이프니츠의 정치 철학과 정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텍스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텍스트는 라이프니츠가 남긴 무수한 단편 중에서도 매우 질 좋은 텍스트에 속한다. 라이프니츠는 당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수신자가 있는 서신이 아닌 단편 저작들의 경우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를 위해 쓴 것이 많다. 그런 글들은 정제되지 않아 읽기 어렵고 내용이 적어서 짧고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그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의에 관한 이 두 저작은 여타의 다른 단편들과 달리 출판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독자를 고려해 여러 차례 손을 본 글이다. 더군다나 첫 번째 저작은 그 독자가 자신의 주군이었고 프로이센의 여왕이었으니 다양한 예를 들면서 매우 성의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저작도 정의 개념에 관해서 다른 학자들을 비판하면서 매우 설득력 있는 논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의 정치 철학이나 정의 개념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저작으로 라이프니츠를 정치 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

4) 1703년 8월 3일 라이프니츠가 소피 샤롯데에게 보낸 서신: A I, 22, 529쪽. “저는 선제후 부인께서 보는 앞에서 선제후와 함께 선과 정의의 본성에 관해서, 이것이 자의적인 것인지, 수들과 도형들처럼 영원한 이성에 근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나서 작은 논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느 날 당신의 날카로운 눈앞에 감히 이 하찮은 것을 내놓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5) 각주 3의 책 139-141쪽 참조.

를 차지하는 철학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정의 이론에 있어서는 주목해야 하는 철학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필연적 진리로서 정의

정의에 관한 두 저작 중 첫 번째 저작 「선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라이프니츠는 정의가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노년의 대학자는 자신의 주군에게 선과 정의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대화 『에우티프론』(Euthyphron)에 등장하는 딜레마를 모방해서 신성함의 자리에 선과 정의를 넣어 문제를 제기한다.

“사람들은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하고 정의롭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선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신이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말하자면 정의와 선이 자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수들과 비례 관계들처럼 사물의 본성에 대한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인 것입니다.”⁶⁾

신의 절대적 능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자의 입장일 것이고 선과 정의의 개념이 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신의 의지에 따라 선과 정의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반해 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과 정의가 신도 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본성상 확고하고 규정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입장은 물론 정의가 사실의

6) Sur la nature de la bonté et de la justice: 145쪽 / 45쪽. (정의에 관한 두 저작의 인용은 아직 아카데미 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의 각주 3의 책에서 쪽수와 Riley의 영어판 쪽수를 함께 제시한다. 내가 알기로 이 저작들은 아직 우리말 번역이 없다. 따라서 번역은 모두 나의 번역이다.)

진리와 같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수학과 기하학의 명제들과 같은 필연적 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 무수히 많은 의문이 생긴다.

일단 정의 개념은 도덕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정치 철학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실천이나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즉 수학과 논리학 같은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학문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명제들과는 다르다. 누구도 ‘2 더하기 3은 5이다.’라는 사칙연산에 의한 계산식을 부정할 수 없고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라는 삼각형의 정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의와 도덕의 영역에는 정의에 대한 무수한 견해가 있고 각기 다른 주장이 있다. 정의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인가? 그런데 어떻게 정의가 필연적 진리에 속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만약 정의가 필연적 진리에 속한다면, 정의에 관한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개념이나 명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의는 오히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주장되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각자가 이것이 정의라고 다른 입장을 취한다. 더욱이 정의의 반대 상황, 즉 부정하고 부당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때로는 정의로운 일이 부정한 일이 되기도 하고 부정한 일이 정의로운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천과 행위의 영역에 부정할 수 없는, 정의에 대한 필연적 진리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떤 도덕적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되는가? 도덕과 정치 같은 실천적 분야는 필연성이 아니라 우연성이 지배하는 영역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정의가 필연적 진리에 속할 수 있는지 정의에 관한 두 저작에서 라이프니츠의 논증 과정을 선입견 없이 살펴보려고 한다.

정의가 필연적 진리라는 주장은 우선 라이프니츠가 구별한 진리의 두 종류와 관련이 있다. 그럼 먼저 라이프니츠가 진리를 어떻게 두 가지로 구별했는지 몇 가지 텍스트를 살펴보자.

“제일 명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순을 포함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짓이라는 필연적인 것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든 더 완전한 것 혹은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 참이라는 **우연적인 것의 원리**이다. 형이상학의 진리 또는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모든 진리, 예를 들어 논리학, 산술, 기하학 같은 것의 진리는 전자의 원리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이런 학문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반대가 모순을 함축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의 의지 혹은 어떤 존재의 의지를 가정해야만 필연적이고 본성상 우연적인 모든 진리는 후자의 원리에 의존한다. | 따라서 **가능한 것 혹은 사물의 본질에 관한 모든 진리, 그리고 사물의 불가능성 혹은 사물의 필연성, 즉 그것의 반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율에 의존한다**. 우연적인 것 혹은 사물의 현존에 관한 모든 진리는 완전성의 원리에 의존한다. 신의 현존을 제외하고 모든 것의 현존은 우연적인 것이다. 게다가 **왜 다른 것이 아닌 어떤 특정한 우연적인 것이 현존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것의 정의 자체만으로 찾을 수 없고 다른 것들과 비교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⁷⁾

“우연적 진리의 경우, 술어가 주어에 실제로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각 개념의 분해가 무한정 계속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증명이나 동일성에 도달할 수 없다. 이 경우 무한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신만이 술어가 주어에 어떻게 속해 있는지 알 수 있고 우연성에 대한 완전한 이유를 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피조물에게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후험적으로(a posteriori)** 주어진다. 그래서 우연적 진리와 필연적 진리의 관계는 무리수의 비율, 즉 공약 불가능한 수의 비율과 공약 가능한 수의 표현 가능한 비율의 관계와 유사하다. …… 본질에 관한 명제 혹은 진리도, 정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통 개념에 이를 때까지 각 개념을 분해하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

-
- 7) 자유와 필연성에 관하여(De libertate et necessitate): A VI, 4, 1445, in: 『자유와 운명에 관한 대화 외』, 33-34쪽. (각주 7-10의 텍스트 인용에서 강조는 필자가 한 것이다.)
- 8) 진리, 우연성, 무구별의 본성 그리고 자유와 예정에 관하여(De natura veritatis, contingentiae et indifferentiae atque de libertate et praedeterminatione): A VI, 4, 1516, in: 『자유와 운명에 관한 대화 외』, 62-63쪽. 또한 같은 책 91-96쪽, 99-107쪽

“이성의 진리는 두 종류다. 첫 번째 종류는 영원한 진리라 불리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므로 그 반대는 모순을 함축한다. 이런 진리의 필연성은 논리적, 형이상학적 혹은 기하학적이며, 불합리함에 빠지지 않고서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다른 종류의 진리는 신이 자연에 부여한 법칙이거나 이 법칙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적(positive) 진리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경험에 의해서 즉 후험적으로 알게 되거나 이성에 의해서 또는 선험적으로, 즉 이 진리를 선택하도록 한 합목적성을 고찰함으로써 알게 된다.”⁹⁾

“§33. 진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추론(raisonnement)의 진리와 사실의 진리. 추론의 진리는 필연적 진리이고 그것의 반대가 불가능하며, 사실의 진리는 우연적 진리이고 그것의 반대가 가능하다. 한 진리가 필연적 진리일 경우, 근원적 관념과 진리에 이를 때까지 더 단순한 관념들과 진리들로 분해하면서 분석을 통해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¹⁰⁾

이 텍스트 외에도 라이프니츠는 여러 곳에서 이와 유사하게 진리를 구별하고 정의하고 있다. 이 설명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필연적 진리는 모순율에 근거한다. ‘모순을 포함하는 것은 거짓이다.’ 반면 우연적 진리는 충족이유율에 근거한다. 어떤 것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근거는 완전성의 원리와 최선의 원리를 따른다.

참조.

- 9) 『변신론』 *Essais de Théodicée*, 신앙과 이성의 조화에 관한 서설, 2항.
- 10) *Monadologie*, §33. 보통 사실의 진리와 대비되는 추론의 진리를 ‘이성의 진리’와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철학사 서술 과정에서 그렇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표현에 따르면 ‘추론의 진리’, 즉 필연적 진리와 ‘사실의 진리’, 즉 우연적 진리는 모두 ‘이성의 진리’의 범주에 속한다. 왜냐하면 각주 9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듯이, 사실의 진리가 경험에 의해서 알려지지만 이성에도 알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론의 진리를 이성의 진리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진리 구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필연적 진리에서 개념의 분해는 유한하며 따라서 동일 개념이나 공통 개념 같은 근원 개념으로 분해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우연적 진리에서 개념의 분해는 무한하게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유한한 능력을 가진 인간은 이 무한한 분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오직 신만 이런 무한한 분해를 할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인간은 우연적 진리에서 엄격한 증명을 할 수 없다.

셋째, 이런 차이에서 비롯되듯이 필연적 진리는 개념 그 자체의 정의에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추론의 진리라는 것이다. 우연적 진리는 다른 것들과의 비교 등 사실의 검증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필연적 진리는 사물의 본질과 가능성에 관한 판단이고 우연적 진리는 사물의 현존에 관한 판단이며 주장하는 사람의 의지에 의존하는 판단이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사실의 진리를 현존의 진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반해 필연적 진리는 사물이 현존하든 현존하지 않든 관계가 없다. 실제로 현존하지 않더라도 사물의 가능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판단이다.¹¹⁾

다섯째, 필연적 진리는 그것의 반대가 불가능하다. 즉 반대를 가정하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반면 우연적 진리는 그것의 반대가 가능하다. 즉 반대를 가정해도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학과 기하학, 논리학에서 필연적 진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적용되며 신도 변경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더하기 3은 5'와 같은 명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유효하다. 이것을 부정하면 논리

11) 가능성 개념과 진리 규정의 관계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는 가능성이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모순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라이프니츠와 아르노의 서신』, 122쪽 참조) 그리고 사물의 가능성은 우리가 실제적 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Meditationes de cognitione, veritate et ideis*: A VI, 4, 589쪽) 그에 따르면 우리가 사물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할 때는 명목적 정의의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Discours de metaphysique*, §24: A VI, 4, 1568쪽)

적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필연적 진리는 영원한 진리이자 보편적 진리이다. 이에 반해 우연적 진리에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진리 결정이 달라질 수 있고 항상 다수의 가능성들 중에서 비교를 통해서 참일 개연성이 높은 것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정의는 더 정의롭다, 덜 정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우연적 진리의 문제인가? 정의가 행위에 대한 판단일 때 어떤 행위는 다른 행위에 비해서 더 정의롭다고 판단하고 어떤 행위는 덜 정의롭다고 판단하지 않는가? 단 하나의 정의로운 행위가 있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 다른 행위는 정의롭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수와 비율 관계에 나타나는 필연적 진리가 정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이것이 어떤 결정된 의미를 가진 확고한 명사(terme)라면, …… 이 정의(Justice)라는 명사 혹은 단어는 어떤 정의(definition)나 이해 가능한 개념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논리학의 논쟁 불가능한 규칙들을 사용해 모든 정의(definition)로부터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규칙들은 사실이 아니라 이성에만 의존하는, 논리학, 형이상학, 산술학, 기하학, 운동에 관한 학문 같이 필연적이고 증명적인 학문을 구축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것이다.”¹²⁾

이 주장은 정의가 추론의 진리라는 것, 앞에서 정리한 필연적 진리의 특징 중 세 번째를 언급하는 것이다. 정의(正義)는 그것의 정의(定義)로부터 논리학의 규칙을 이용해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증명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를 남겨두고 이어지는 라이프니츠의 설명을 살펴보자.

“그리고 정당한 권리에 대한 학문(la science de droit)도 이런 [이

12) Sur la nature de la bonté et de la justice: 153-155쪽 / 49-50쪽.

성에만 의존하는] 학문에 해당한다. 이 학문은 경험과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사실에 근거를 제공하고 앞서 사실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세상에 아무런 법도 없을 때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유효할 것에 관한 것이다.”¹³⁾

이 텍스트의 ‘la science de droit’을 현대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의 관점에서 ‘법학’으로 읽으면 안 된다. 실증주의 사조에 영향을 받아 19세기 중반 이후 도입된 법실증주의는 도덕과 법의 분리를 주장하고 자연법 이론에 반대하는 주장이다. 반면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droit(라틴어: jus, 영어: right, 독일어: Recht)’는 법실증주의가 등장하기 이전 자연권 이론에서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권리’ 혹은 ‘정당(正當)’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¹⁴⁾ 이 ‘권리’는 오늘날 쉽게 사용하는 법적 권리, 즉 법에 의해 정당화된 권리가 아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권리에 관한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법적 권리 이외의 문제에서 거의 항상 ‘정당한 권리’를 찾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나는 ‘droit’을 ‘정당’과 ‘권리’라는 뜻을 결합해 ‘정당한 권리’라고 읽고 번역했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프니츠의 이 텍스트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다. 말하자면 이것을 현재의 관점에서 ‘법학’이라고 읽으면 이 텍스트 전체 맥락과 맞지 않아 라이프니츠의 중요한 주장을 읽을 수가 없다. 하여튼 여기서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것은 권리 혹은 정당함을 다루는 학문도 정의를 다루는 학문과 같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이 ‘정당한 권리에 대한 학문’을 언급한 이유는 다음의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타난다.

13) Sur la nature de la bonté et de la justice: 155쪽 / 50쪽.

14) 서구 유럽어에서 ‘droit’, ‘jus’, ‘right’, ‘Recht’는 자연권 이론의 역사와 법실증주의의 전개를 배경으로 모두 유사한 어의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들은 법, 권리, 정당, 옳음, 바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 단어로 쓰였다. 하지만 우리말은 위와 같이 각각 다른 단어로 쓰기 때문에 텍스트와 맥락마다 다르게 읽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구 법학의 용어들이 역사적 전개에 따라 사용된 의미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도 유의해야 한다.

“정의를 권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부분적으로 정당한 것(le droit; 권리)과 법(la loi)을 혼동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정당한 것은** 부당할 수 없다. 이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법은 부당할 수 있다.(Le droit ne sauroit estre injuste, c'est une contradiction; mais la loi le peut estre.) 왜냐하면 법을 제안하고 주장하는 것이 권력이고, 만약 이 권력이 지혜와 선한 의지를 결여하고 있다면, 매우 악한 법을 제안하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이 부분은 라이프니츠의 자연권 이론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을 드러내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정의가 필연적 진리에 속한다는 주장에 상당히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먼저 라이프니츠 자연권 이론의 근본 토대는 정당한 권리와 법을 분리하는 것이다.¹⁶⁾ 따라서 라이프니츠가 사용하는 정당한 권리 개념은 법과 연관 지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라이프니츠의 권리 개념은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혹은 실정법이 생기기 이전에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권리는 법에 의해서 정당성 혹은 부당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때 권리는 법이 아니라 정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때 권리는 부당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한 권리’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을 함축한다. 반면에 법은 권력에 기초하기 때문에 부당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권리나 정당한 것과 달리 법은 애초부터 부당할 가능성이 있는 우연적 진리에 속한다. 즉 법은 법을 만든 사람이나 재판관의 의지에 따라 부당할 수도 있다. 자연법 이론에

15) Sur la nature de la bonté et de la justice: 155쪽 / 50쪽.

16) 법철학자이자 법사학자인 암가르트는 권리(Recht)와 법(Gesetze)의 분리가 라이프니츠 전체 법이론을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기둥과 같다고 평가한다. Matthias Armgardt, “Die Rechtstheorie von Leibniz im Licht seiner Kritik an Hobbes und Pufendorf”, in: “Das Recht kann nicht ungerecht sein ...” Beiträge zu Leibniz’ Philosophie der Gerechtigkeit, 2015, 13-15쪽 참조.

반대하는 법실증주의가 권리의 정당성을 찾는 문제에서 정의가 아니라 법적 사실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도 우연적 진리로서 법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우연적 진리에 속하는 법과 필연적 진리에 속하는 정의와 정당한 권리를 혼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와 법을 결부시켰을 때 항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정의가 필연적 진리라는 라이프니츠의 주장을 생각하면서 이 텍스트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을 발견한다. 그것은 ‘정당한 것은 부당할 수 없다. 정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한 부분이다.¹⁷⁾ 정의의 반대는 부정 혹은 부당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필연적 진리의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의 반대가 모순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일견 말장난 같아 보이는 ‘정당한 것은 부당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 명제는 마치 ‘2 더하기 3은 5’라는 계산식처럼 반대를 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필연적 진리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즉 정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이것은 개념적 모순이며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의에 관한 첫 번째 저작에서 정의가 필연적 진리에 속한다는 주장은 이 정도의 논거가 제시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는 경험이 아니라 정의(定義)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의를 행하는 사례나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엇이 정의인지 알 수 있고, 법이나 관습이 없어도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다음의 텍스트를 보면, 라이프니츠는 정의가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이미 청년기부터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정의 개념이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의 영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7) “Le droit ne sauroit estre injuste” 이 문장을 오늘날 자연스러운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권리는 부당할 수 없다.’라거나 ‘법은 부당할 수 없다.’라고 읽으면 라이프니츠가 의도한 필연적 진리로서 정의에 대한 설명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

“권리에 대한 이론(Doctrina juris)은 경험이 아니라 정의(定義)에 의존하며 감각적 증명이 아니라 이성적 증명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말하자면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당함(jus, juris)에 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정의(justitia)는 어떤 적합성(congruitas, congruitate)과 비례성(proportionalitas, proportionalitate)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없어도 그리고 어떤 것이 정의에 반해서 실행되어도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아무도 수를 세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셀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도 수들의 관계가 참인 것과 같다. …… 따라서 이 학문의 근본 명제들(decreta)이 영원한 진리에 속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명제들은 모두 조건 명제들이고 현존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존을 가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불렀던 분명하고 구별되는 상상에서 나오며 단어로 표현한다면 정의(定義)와 같은 것이다. 더욱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도 항상 실제로 현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리고 물론 질문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할 경우에는 항상 참이다.”¹⁸⁾

3. 정의가 우연적 진리라면

라이프니츠의 주장과는 다르지만 정의가 필연적 진리가 아니라 우연적 진리에 속한다는 견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라이프니츠의 주장대로 정의가 필연적 진리라면 그것의 반대인 부정과 부당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정과 부당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정의가 사실의 진리라면 정의의 반대인 부정과 부당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바꿔 말하면 정의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란 없고, 경우에 따라 정의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부정하고 부

18) Elementa Juris Naturalis(1669/70): A VI, 1, 459쪽.

당한 것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경우에 따라, 사안에 따라 더 정의롭고 덜 정의로운 일이 있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기준에 맞춰 그렇게 되어야 정의이고 나머지는 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다.

그래서 정의가 우연적 진리라는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라이프니츠도 정의에 관한 첫 번째 저작, 「선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자신 주군, 정치 권력자에게 필연적 진리로서 정의를 설명하면서 많은 부분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논의를 시작하면서 라이프니츠가 제시한 딜레마에서 전자는 신이 행하는 것은 신이 원하기 때문에 선하고 정의롭다는 것이다. 즉 선과 정의 개념은 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신은 최고 권력자로 대신해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이 딜레마는 통상의 도덕과 정치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의도는 정치 권력자인 자신의 주군에게 정의가 우연적 진리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견해의 문제점을 여러 사례를 들어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정의는 개념 차원의 문제만 아니라 행동, 즉 실천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정의가 자의적이라는 견해는 사실상 신의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의 개념이 신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신을 찬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과 악마를 구별하지도 못할 것이고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결국 사람들은 덜 악한 신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자들은 “신의 절대적 권한에 빠져 신이 무고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¹⁹⁾ 이것은 사실상 선과 정의가 신의 의지와 능력에 의존한다고 믿는 것이다.

19) Sur la nature de la bonté et de la justice: 145쪽 / 46쪽; 『변신론』 *Essais de Théodicée*, 신앙과 이성의 조화에 관한 서설, 37항 참조.

라이프니츠는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트라시마코스의 정의(justice)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예로 들면서 정의를 우연적 진리로 보는 견해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트라시마코스의 정의에 따르면 “정의란 최고 권력자의 뜻에 맞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만약 정의가 그런 것이라면, 어떤 최고 법정의 판결도 어떤 최고 판사의 판결도 부당한 것이 없을 것이고 악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는 비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같은 행동이 판결을 내린 사람에 따라 정의로울 수도 있고 부당한 것일 수도 있다면 그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²⁰⁾ 정의를 필연적 진리라고 볼 경우, 정의를 부당하다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도덕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조롱거리가 된다. 따라서 부정과 부당을 정의라고 할 경우, 수치심이 생기는 것이 필연적이다. 정의를 우연적 진리로 믿는 자들은 아마도 이 조롱을 견딜 수 있거나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또한 트라시마코스과 유사한 견해를 주장한 사람으로 흄스를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흄스는 “신이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의가 통치자의 의지와 권력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확실하고 규정된 정의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²¹⁾고 말하면서 트라시마코스과 흄스의 견해가 갖는 궁극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정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되면 배반, 암살, 독살, 무고한 사람을 고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정당한 일이 될 것이다.”²²⁾

20) Sur la nature de la bonté et de la justice: 147쪽 / 47쪽.

21) Sur la nature de la bonté et de la justice: 149쪽 / 47쪽.

22) Sur la nature de la bonté et de la justice: 149쪽 / 47쪽.

이것은 사실상 정의 개념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다. 즉 정의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 부당한 행동이 처벌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권력자의 부당한 행동에 불평하는 경우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사람들이 정의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또한 반대로 권력자가 정의로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이 그를 정의롭게 만들어 주는 근거는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공한 폭군, 성공한 쿠데타를 비난할 수 있는 역사는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성공한 폭군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처벌받지 않은 부당한 행동이 왜 부당하고 처벌받아 마땅한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²³⁾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형식적 근거(*raison formelle*)로서 정의 개념이다. 「선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를 시작하면서 그가 제시한 딜레마 질문을 접하고 사람들은 정의가 필연적 진리라면 그 개념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정의 개념의 내용을 물을 것이다. 확실하고 규정된 정의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관한 질문도 중요하다. 하지만 라이프니츠가 정의의 형식적 근거를 말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필연적 진리로서 정의 개념이 왜 필요한가도 그 내용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 개념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필연적 진리로서 확실하고 규정된 정의 개념은 그것의 반대인 부정과 부당한 것들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이의를 제기할 때 형식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정의를 우연적 진리라고 생각하면, 부정과 부당을 비판할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그 기준을 권력에 둔다면, 즉 정의가 권력자의 의지와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정의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할 것이고 최고 권력자는 그 자체로 최고로 정의로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겪은

23) Sur la nature de la bonté et de la justice: 149-151쪽 / 47-48쪽.

성공한 쿠데타 같은 역사가 정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없게 된다. 라이프니츠는 이것이 어디에서나 동일하고 영원하고 필연적인 진리와 우연적이고 변화 가능한 자의적 진리를 혼동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혼동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당한 권리와 법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정의를 필연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의 개념의 내용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형식적 근거로서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즉 부정과 부당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필요한 선험적 근거로서 정의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가 필연적 진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의 관점에서, 즉 정의를 우연적 진리로 볼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형식적 근거로서 정의 개념의 필요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한 후 라이프니츠는 정의 개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정의의 형식적 근거를 결정하고, 행동들이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행동들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말한 것에서 그 기준을 이미 예견할 수 있다. **정의**는 지혜(sagesse)와 선(bonté), 이 둘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과 일치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선의 목적은 최고의 유익(bien)이다. 하지만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유익의 인식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고 악한 것을 피하려는 경향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²⁴⁾

24) Sur la nature de la bonté et de la justice: 155쪽 / 50쪽.

4. 맺음말 : 도덕적 필연성의 의미

이 고찰이 주목한 것은 정의가 필연적 진리라는 주장이다. 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정의는 행위와 실천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정의에 반대되는 부정하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반대가 불가능한 필연적 진리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에 상응하는 라이프니츠의 논증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의문은 라이프니츠가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에서도 형이상학적 필연성에 의해 필연적인 것과 도덕적 필연성에 의해 필연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몇 가지 고찰할 점이 있다.

형이상학적 (혹은 논리적, 절대적) 필연성과 도덕적 필연성을 구별하는 것은 라이프니츠가 『변신론』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그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필연과 우연, 가능과 불가능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면서 이 두 종류의 필연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작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적한다.²⁵⁾ 형이상학적 필연성은 논리학, 기하학 같은 학문에서 진리가 갖는 필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필연적 진리의 저 특성, 즉 반대가 모순을 함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반면 도덕적 필연성은 “지혜와 선의 원리에 의해 필연적인 것”²⁶⁾이며 최선을 선택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필연성이다.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도덕적 필연성에 의한 것이다. 이런 선택은 모순을 함축하지 않는다. 선택되지 않은 다른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⁷⁾ 도덕적 필연성은 이 점에서 형이상학적 필연성과 다르고, 신의 창조가 도덕적 필연성을 따른다

25) 『변신론』 174항, 180항.

26) 『변신론』 174항.

27) 『변신론』 230항, 282항, 367항.

는 점에서 신에게 자유가 가능하다.

도덕적 필연성은 행위와 실천 차원에서 작동하는 원리이며 사물의 현존에 관계하는 원리이다. 그리고 반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연적 진리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²⁸⁾ 더욱이 도덕적 필연성이 지혜와 선의 원리에 의해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정의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의 인용한 텍스트에서 라이프니츠는 정의가 지혜와 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의는 우연적 진리 아닌가?’라는 의문은 유효하다. 정의는 그 반대가 불가능하지 않고 모순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주장에서 문제는 필연적 진리로서 정의를 주장하면서 논리학, 기하학과 같은 학문에 적용되는 논리적,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당한 것은 부당할 수 없다. 이것은 모순이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는 자신이 『변신론』에서 그렇게 강조한 형이상학적 필연성과 도덕적 필연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의가 필연적 진리라는 라이프니츠의 주장이 형이상학적 필연성과 도덕적 필연성을 혼동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본성상 이 둘을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라고 본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정의의 이런 특징을 “지혜는 지성에 있고 선은 의지에 있다. 결과적으로 정의는 이 둘 모두에게 있다.”²⁹⁾라는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정의는 지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의는 개

28) 『변신론』 282항: “신 자신은 최선을 선택하고 인간은 결국 자기에게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선택향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필연성은 우연성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 기하학적 혹은 형이상학적 이라고 불리는 필연성, 즉 그 반대가 모순을 함축하는 필연성이 아니다.” 『변신론』의 우리말 역자 이근세도 도덕적 필연성이 우연성과 같다고 보면서 절대적 필연성과 절대적 우연성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673쪽 각주 765 참조)

29) Sur la nature de la bonté et de la justice: 155쪽 / 50쪽.

넘 차원에서 지성에 의해서 파악되며 논리적 필연성에 따라 그 반대인 부정과 부당을 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점에서 라이프니츠는 「선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부정과 부당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형식적 근거, 선험적 근거로서 정의를 언급한 것이다. 또한 정의는 도덕과 정치의 영역에서 공적과 과실, 칭찬과 비난, 보상과 처벌의 원리가 작동하는 실천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점에서 도덕적 필연성에 따라 그 반대인 부정과 부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허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단지 어떤 사람의 선택과 행위가 지혜와 선을 지향하지 않았을 경우 그 과실에 따라 비난과 처벌이 주어질 뿐이다. 따라서 정의는 논리적 필연성에 따르는 측면과 도덕적 필연성에 따르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필연적 진리이다. 이 글을 시작할 때 던진 의문들이 가능한 이유도 이런 정의의 본성에 있다.

여기서 나는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도덕적 필연성’이라는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물론 이 개념이 ‘도덕’과 ‘필연’의 혼합이긴 하지만, 이것을 ‘도덕적’에 방점을 두어 ‘우연성’의 의미를 강조해 볼 수도 있지만 ‘필연성’에 더 방점을 두어 칸트에 앞서 도덕적 의무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든 우연적인 것들의 근원은 필연적이고 영원한 것이며, “도덕적 필연성은 현자들에게서 실현되지 않는 일이 없는 이성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포괄하고”, “현자에게 필연적인 것과 마땅한 것은 동일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³⁰⁾

30) 『변신론』 7항; 자유, 필연, 우연에 관하여 흄스가 출간한 영문 저작에 관한 고찰 4항; 형식 논증으로 축약된 논쟁의 개요, 논박 8의 반론. 그 외에 237항: “신은 항상 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에 의해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들은 항상 자유로운 것이다. 지혜 및 도덕적 필연성에 의해 강제되고 선의 고찰에 의해 의무를 갖는 것은 자유로우며, 형이상학적 필연성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에 대한 첫 번째 저작 「선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라이프니츠의 주된 관심사는 정의가 우연적 진리가 아니라 필연적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형식적 근거로서 정의가 정의 개념의 내용에 앞서 다뤄졌다. 두 번째 저작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의 공통 개념을 다룬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어떤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인지 측정하기 위해서 ‘타인이 항의할 근거가 있는가’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현자의 자애”라는 자신의 보편 정의론(*justitia universalis*)의 정의(定義)를 제시한다. 라이프니츠의 정의에 관한 두 저작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주제는 이 보편 정의론과 자연권의 세 단계에 대한 논의인데 이것은 두 번째 고찰에서 다룰 것이다.

참고문헌

- G. W. Leibniz, 『자유와 운명에 관한 대화 외』, 이상명 옮김, 책세상, 2011.
- G. W. Leibniz, 『라이프니츠와 아르노의 서신』, 이상명 옮김, 아카넷, 2015.
- Christoph Horn, Nico Scarano (hg.), *Philosophie der Gerechtigkeit: Texte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2002.
- G. W. Leibniz, *Rechtsphilosophisches aus Leibnizens ungedruckten Schriften*, hg. Georg Mollat, Leipzig 1885, 두 번째 판: *Mittheilungen aus Leibnizens ungedruckten Schriften*, Kassel 1887, Leipzig 1893.
- _____, *Sämtliche Schriften und Briefe*, hrsg. von der Preussischen (aft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now Berlin-Brandenburg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Reihe I-VII, Darmstadt, after Leipzig, now Berlin, 1923ff. (A VI(Philosophische Schriften))
- _____, *Political Writings*, trans. & ed. by Patrick Riley, Cambridge 1972.
- _____, *Essais de Théodicée*, WBg, Darmstadt, 1985, 『변신론』, 이근세 옮김, 아카넷, 2014.
- _____, *Frühe Schriften zum Naturrecht, lateinisch-deutsch*, hg. Hubertus Busche, Hamburg 2003.
- _____, *Gedanken über den Begriff der Gerechtigkeit*, hg. Wenchao Li, übers. Pierre Castagner, Nina Asmussen, Stefanie Ertz und Stefan Luckscheiter, Hannover 2014.
- _____, Zwei Schriften über die Gerechtigkeit, bearbeitet von Stefan Luckscheiter, in: “Das Recht kann nicht ungerecht sein ...” *Beiträge zu Leibniz’ Philosophie der Gerechtigkeit*, hg. Wenchao Li, *Studia Leibnitiana Sonderhefte* 44, Stuttgart 2015, Anhang 137-179쪽.
- Matthias Armgardt: “Die Rechts-theorie von Leibniz im Licht seiner Kritik

an Hobbes und Pufendorf’, in: “*Das Recht kann nicht ungerecht sein ...*” *Beiträge zu Leibniz’ Philosophie der Gerechtigkeit*, hg. Wenchao Li, Stuttgart 2015, 13-27쪽.

Leibniz's Two Writings on Justice:

1. Consideration on 'Justice as a Necessary Truth'

Lee, Sang Myung (Soongsil Univ.)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claim in Leibniz's two writings on justice that justice belongs to the necessary truth. First of all, I introduce 'two writings on justice', which are not so known Leibniz's political philosophical work. And in order to examine his claim that justice is necessary truth, we examin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ruth of reason and the truth of fact presented by him. And through the proposition that "right can not be unjust" I will look at Leibniz's argument that justice is the necessary truth with a formal basis. Here it should be noted that Leibniz distinguishes between rights and laws. It also explains what it is to see justice as a contingent truth and then what is happening, from this the meaning of the claim that justice is the necessary truth is highlighted. Finally, through this study I will examine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moral necessity' and suggest that the notion of justice has both moral necessity and metaphysical necessity, so that Leibniz's moral philosophy can be viewed as a moral deontology.

Key words: justice, unjust, unright, necessary truth, contingent truth, formal reason, moral necessity, logical necessity

철학탐구 제48집

이상명 e-mail: leesamy@ssu.ac.kr

투 고 일	2017년 09월 28일
심 사 일	2017년 10월 30일
게재확정	2017년 11월 15일